

2022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보호계호요원) 채용 공고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22년도 제1회 「기간제 근로자(보호계호요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 5.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구분	근무예정지	선발직종	담당 업무	선발예정인원
기간제근로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계호요원	보호시설 경비 보호외국인 계호 및 보호	1명(男)

2. 신분사항 및 근로조건

- 기간제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 예산 및 근무성적 등에 따라 재계약가능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관련 절차에 따라 공무원직(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가능
- 급여수준(2022년 기준)
 - 월 고정급 2,628,590원(세전)
-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 소속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시간 【3교대근무】 1주: 주간근무/ 2·3주: 야간근무

3. 응시대상 및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성별: 남자, 학력: 제한 없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우대사항
 - 경비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자격증(태권도, 유도, 검도) 및 어학자격증(영어, 중국어) 소지자
 - 저소득층, 장애인 응시자

• 저소득층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 부모 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생활근거지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4. 채용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여부에 따라 합격을 결정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3배수의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경비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경력별 차등 우대)
- 응급구조사 자격증
- 무도자격증 : 태권도, 유도, 검도(2단이상)
- 어학자격증(점수별 차등 우대)
 - 인정기준 : 영어 TOEIC 600점이상, 중국어 신 HSK 5급 150점이상 다른 시험도 이에 준해서 인정함
- ※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 동일언어에서 검정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 1가지만 부여
- ※ 상한점수 내에서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 장애인)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 및 가능성
- 선발분야 업무수행 적합성
- 응시분야 업무관련 기본지식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성 및 성실성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로 선발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2.1.5.(수)~’ 22.1.10.(월)	법무부, 나라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응시원서접수	‘22.1.7.(금)~’ 22.1.10.(월) ※ 토요일, 공휴일 제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3층 서무팀	
서류전형(예정)	‘22.1.12.(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3층 회의실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2.1.13.(목) 10:00	법무부, 나라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면접시험(예정)	‘22.1.18.(화) 14:0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3층 회의실 2	
최종 합격자 발표	‘22.1.20.(목) 10:00	법무부, 나라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시	
신규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채용후보자 등록 【 ‘22.1.24.(월) 10:00】	근로개시(예정)	‘22.1.25.(화)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3층 서무팀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퀵서비스 또는 택배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겹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 문자 회신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화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채용공고 사이트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양식 또는 임의양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별지서식 제6호]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본인)

○ 우대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 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서식 제7호] 작성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 어학성적표(영어, 중국어) 사본
- 무도자격증(태권도, 유도, 검도 2단이상) 사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 1부(본인기준,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 사진(반명함판 3.5cmX4.5cm) 2매
- 통장사본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요건 부적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서무팀(담당자 : 양운정, ☎ 032-890-6406, 6407)으로 연락바랍니다.

(별지서식 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시행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보호계호요원			(한자)	
생월/생일	※ 생년기재 불요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분야	보호계호요원
성 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보호계호요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 현 주소지(주민등록)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재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서식 2호)

이 력 서

1. 인적사항			
성명		응시분야	보호계호요원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사항 없음		
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추가항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장애인		

2. 경력사항

근무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		
	~		

3. 자격증 및 특기사항

* 자격증명, 특기사항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특기사항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_____(서명)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별지서식 3호)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분야	보호계호요원
----	------	--------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 부모(배우자)직업 등 개인신상은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2022. . .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당해 경쟁채용시험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메일,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2. . .

성명 :

(서명)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7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②	비고 ③																
	부터	까지																					
	(예시) '20.6.30	'21.7.1	00 은행	청원경찰	경비	주40시간 근무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table><tr><td colspan="2">발급자</td></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able><table><tr><td colspan="2">확인자</td></tr><tr><td>소속</td><td></td></tr><tr><td>직위</td><td></td></tr><tr><td>성명</td><td>(인)</td></tr></table>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당 00시간 근무 기재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 등 기재)																							